

# 보도와 평론





## 2015-3036 신문윤리강령 위반

1. 동아닷컴 발행인 김 일 흥
2. 서울신문 발행인 이 철 휘

### 주문

동아닷컴(donga.com) 2015년 3월 17일자 「람보르기니 추돌 사고 어떻게 낫길래? 수리비만 1억4000만원」 제목 등 다수의 기사 재전송, 서울신문(seoul.co.kr) 3월 17일자 「람보르기니 추돌사고, 수리비 1억 4000만원 청구 “차 가격은?”」 제목 등 다수의 기사 재전송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유

1. 동아닷컴과 서울신문의 위 적시 재전송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아닷컴)= 『람보르기니 추돌 사고 어떻게 낫길래? 수리비만 1억4000만 원!

기사입력 2015.03.17 14:51:00 기사수정 2015.03.17 14:51:29

‘수억대’ 몸값을 자랑하는 람보르기니 추돌사고에 누리꾼들이 주목하고 있다. 경남 거제시 한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는 20대 근로자 A씨가 시가 4억 원대 람보르기니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씨는 3년 치 급여와 맞먹는 액수를 수리비로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낮 거제시 고현동 서문로 신한은행 앞 도로에서 A씨가 몰던 SM7 승용차가 앞서 달리던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차량의 후방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SM7 승용차 본넷이 파손되고 람보르기니 뒷범퍼가 일부 파손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A씨는 람보르기니 수리비로만 약 1억 4000만 원을 물게 됐다.

일반적인 차량 대물 보험은 1억 원이 한도인데 SM7 차주는 나머지 비용을 추가로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여기에 수리기간 중 동급 차량 대여에 따른 하루 렌트비 200만 원 상당도 SM7 운전자인 A씨의 몫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만약 이날 사고가 일반적인 국내 승용차끼리 였다면 아무리 고가라도 수백만 원을 넘기 힘든 수준이었다”고 한 매체를 통해 평가했다.

A씨는 지역 조선소 협력사에서 용접 일을 하는 근로자로 일주일 내내 야근, 주말 특근을 빠뜨리지 않아야 400만 원 안팎을 월급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고난 차량인 람보르기니 가야르도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알려진대로 신차 비용은 4억원대이고, 수리비만 1억원을 뛰어넘을 정도로 고가의 슈퍼카이다.

연예인중에는 진재영이 람보르기니 가야르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진재영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람보르기니 가야르도의 사진을 공개해 화제를 모으기도.

도끼 또한 자신의 SNS 등에 람보르기니를 비롯해 고급 외제차 사진을 게재한 바 있다.

사고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내가 다 속상하다” “국내 승용차 였다면 이정도까지는 아니었을듯” “그저 안타깝네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동아경제 기사제목 eco@donga.com」

<<http://economy.donga.com/3/all/20150317/70171344/2>>

(서울신문)=『람보르기니 추돌사고, 수리비 1억 4000만원 청구 “차 가격은?”

람보르기니 추돌사고, 람보르기니 수리비

경남 거제시의 한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는 20대 근로자가 시가 4억 원대의 슈퍼카 람보르기니와 접촉사고를 내 3년 치 급여를 수리비로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16일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경남 거제시 고현동 서문로 신한

은행 앞 도로에서 A씨가 몰던 SM7 승용차가 앞서 달리던 ‘람보르기니 가야르도(Lamborghini Gallardo)’ 차량의 후방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SM7의 후드와 앞 범퍼가 찌그러졌고 람보르기니의 뒤 범퍼가 일부 파손됐다.

그러나 람보르기니의 수리비가 무려 1억 4000만원 남짓이 청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람보르기니 가야르도는 신차 가격이 4억 4000만원에 달하는 최고급 슈퍼카다.

게다가 람보르기니 수리기간 중 동급 차량 대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 렌트비 약 200만원도 SM7 운전자가 비용을 대야할 가능성이 높다.

SM7 운전자는 지역 조선소 협력사에서 용접 일을 하는 20대 근로자로 일주일 내내 야근, 주말 특근을 빠뜨리지 않아야 400만 원 안팎을 월급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람보르기니 수리비 및 동급 차량 렌트비 등을 모두 수습하려면 꼬박 3년 치 연봉을 모두 쏟아부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31850006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동아닷컴과 서울신문은 경남 거제에서 일어난 슈퍼카 람보르기니 추돌사고와 관련, 비슷한 기사를 집중 송고하였다.

동아닷컴은 3월 16일 13시 38분 첫 소식을 내보낸 뒤 근 24시간 동안 무려 65회나 제목과 기사 일부만 약간 고친 뒤 지속적으로 기사를 양산하였다. 서울신문도 이날 50회에 걸쳐 제목과 내용이 비슷한 기사를 내보냈다. 서울신문은 이 사고가 보험사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뒤에도 15차례나 재전송했다.

두 신문의 재전송은 여타 매체와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많으며, 보완취재로 한두 줄의 사실이 추가되었다 하더라도 어뷰징을 노린 불공정한 행위이다. 페이지뷰를 늘리기 위한 재전송 행위는 건전한 여론형성이라는 언론 본연의 자

세를 저버린 태도로, 신문의 신뢰와 품위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들은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5-3086 신문윤리강령 위반

### 매경닷컴 발행인 장용성

#### 주문

매경닷컴(mk.co.kr) 2015년 5월 23일자 「요리사, 머리 자른 코브라에 물려 손질하다 사망 ... 몇 시간까지 살아있나?」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유

1. 매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사비교표

요리사, 머리 자른 코브라에 물려 손질하다 사망 ... 몇 시간까지 살아있나?	中 요리사, 목 잘린 코브라에 물려 즉사
기사입력 2015.05.23 15:31:14 최종수정 2015.05.23 16:03:24	기사입력 2014.08.25 16:20:05 최종수정 2014.08.25 17:09:37
머리가 잘려나간 코브라의 생명은 얼마나 지속될까? 중국에서 코브라를 조리하던 요리사가 잘려나간 코브라 머리에 손을 물려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 22일(현지시간) 영국 미러와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남부 광둥성에서 코브라 특별 요리를 조리하던 요리사 평판은 머리가 잘린지 20분이 지난 코브라에게 손을 물렸다. 곧 코브라 독은 온몸으로 퍼졌고, 평판은 해독제를 맞기도 전에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코브라를 손질하던 중국 요리사가 잘린 코브라 머리에 손을 물려 사망하는 황당한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 22일(현지시간) 영국 미러와 데일리메일 등 주요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남부 광둥성에서 인도차이나 스피팅코브라 특별 요리를 조리하던 요리사 평판(Peng Fan)은 머리를 잘라낸 지 20분이거나 지난 코브라에게 손을 물려 즉사했다. 독이 온몸으로 퍼진 요리사는 해독제를 맞기 전에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p>데일리메일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뱀의 머리가 몸통에서 잘려나간 이후에도 얼마나 오랫동안 꿈틀거리며 살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영상에서 요리사는 뱀의 머리를 잘라낸다. 그러나 잘린 뱀의 머리와 몸통은 계속 꿈틀거리며 몸부림친다. 심지어는 입 앞 쪽으로 갖다 댄 풀을 물어 보이기도 한다.</p> <p>40년간 코브라 연구를 해 온 뱀 전문가 양홍창은 “모든 파충류가 몸이 잘려나간 이후에도 최대한 한 시간 동안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다”고 전했다.</p> <p>중국 공안은 이번 사고에 대해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요리사가 운이 없었던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p>	<p>데일리메일이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을 보면, 뱀의 머리가 몸통에서 잘려나간 이후에도 얼마나 오랫동안 꿈틀거리며 살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영상에서 요리사는 뱀의 머리를 잘라낸다. 그러나 잘린 뱀의 머리와 몸통은 계속 꿈틀거리며 몸부림친다. 심지어는 입 앞 쪽으로 갖다 댄 풀을 물기도 한다.</p> <p>40년간 코브라 연구를 해 온 뱀 전문가 양홍창은 “모든 파충류가 몸이 잘려나간 이후에도 최대한 한 시간 동안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다”고 전했다.</p> <p>한편 요리사를 사망케 한 인도차이나의 스피팅코브라는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출몰하며, 2~ 3m 거리에서 상대의 눈에 정확히 독을 날리는 것으로 유명하다.</p>
<p>캡처시각 15.05.27. 23:30  <a href="http://news.mk.co.kr/sforward.php?domain=news&amp;sc=30000051&amp;year=2015&amp;no=495363">http://news.mk.co.kr/sforward.php?domain=news&amp;sc=30000051&amp;year=2015&amp;no=495363</a></p>	<p>캡처시각 15.05.27. 23:30  <a href="http://star.mk.co.kr/new/view.php?mc=ST&amp;no=1132033&amp;year=2014">http://star.mk.co.kr/new/view.php?mc=ST&amp;no=1132033&amp;year=2014</a></p>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경닷컴은 5월 23일자에 「요리사, 머리 자른 코브라에 물려 손질하다 사망... 몇 시간까지 살아있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 기사는 지난해 8월 보도한 매경닷컴의 기사를 거의 그대로 전재하고 제목과 본문 앞뒷부분 일부를 고친 뒤 다시 실은 것이다. 아무리 하찮은 소식이라 하더라도 지난해 일어난 사건을 올해 일어난 것처럼 읊기는 것은 독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6 - 3075 신문윤리강령 위반

### 일간스포츠 발행인 전 태 석

#### 주문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2016년 1월 30일자 「女모델, 속옷 탈의장면 적나라하게 공개 '경악」 제목의 기사와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유

1. 일간스포츠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女모델, 속옷 탈의장면 적나라하게 공개 '경악』

[일간스포츠] 입력 2016.01.30 13:15



〈캡처시각 01.31 23:14〉

모델 제네비브 모튼의 아찔한 란제리 광고가 눈길을 끈다.

최근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모델 제네비브 모튼의 수위높은 광고가 공개되 화제가 되었다.



공개된 영상 속 모튼은 멋진 남성과 데이트 도중 입고있던 속옷에 마음에 들지 않아 가방에 휴대하고 다니던 간편한 속옷으로 갈아입는다. 이 장면에서 모튼의 둔부와 풍만한 가슴라인이 여과없이 드러나 보는 이를 아찔케 했다.

해당 광고는 'Cheeki' 라는 속옷 브랜드의 광고로, 편한 휴대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와 같은 컨셉의 광고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사진= 유튜브 캡처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9501414](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950141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모델 제네비브 모튼의 수위 높은 광고를 다루고 있다. 유튜브의 영상을 소개한 기사는 모튼이 멋진 남성과 데이트 도중 입고 있던 속옷이 마음에 들지 않아 가방에 휴대하고 다니던 간편한 속옷으로 갈아입는 장면에서 둔부와 풍만한 가슴 라인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고 전한다.

그러나 위 내용은 일간스포츠가 2015년 11월 4일자로 보도한 것이다. 새로 게재한 기사의 사진은 말할 것도 없고 기사 내용도 토씨 하나 다르지 않다. 선정적인 사진과 기사를 재탕한 것이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6-3083 신문윤리강령 위반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 주문

중앙일보(joins.com) 2016년 1월 30일자 「스텔라, 19금 경악 무대...아찔한」

「스텔라가 열띤 공연을 펼치고 있다」 제목의 기사 2건 등 온라인편집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중앙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캡처시각 01.30. 11:42〉



『걸그룹 스텔라가 2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MBC드림센터에서 열린 MBC MUSIC ‘쇼 챔피언’ 현장공개에서 열띤 공연을 펼치고 있다.

이날 ‘쇼 챔피언’에는 신혜성, 여자친구, 김원준, 스텔라, 크로스진, 전설, 한영, 라붐, 헤일로, 임팩트, 안다, 뉘케이, 코코소리, 인앤추, 베이비부 등이 출연했다.

박○○기자 park.\*\*\*an@joins.com』

〈<http://news.joins.com/article/1948899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앙일보는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스텔라, 19금 경악 무대...아찔한」 「스텔라가 열띤 공연을 펼치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기사 2건, 사진 한 장을 맞물려 소개했다. 그런데 각각 클릭되는 이 세 건은 똑같은 기사 하나로 연결된다.

이는 같은 기사를 제목만 바꿔 거듭 올리는 ‘어뷰징’과 다름없다고 하겠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